

# 부자감세와 세금폭탄의 현주소

2010.1.24 |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 khyeo@cins.or.kr

## 목 차

1. 복지확대 VS 세금폭탄
2. 주요 세법 개정 내용
3. 소득세 납부 현황과 감세 규모
4.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과 감세 규모
5. 법인세 납부 현황과 감세 규모
6. 결론 및 정책함의



<http://saesayon.org>

## 1. 복지확대 VS 세금폭탄

###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뜨겁게 전개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 방향, 재원 규모 등을 중심으로 복지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음.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최근에는 보육과 교육, 그리고 의료 부문까지 복지논쟁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격렬히 반대. 심지어 “부자한테 공짜 점심을 줄 필요가 없다”며 무상급식 정책을 ‘부자급식’으로 왜곡하기도 함.
- 대통령 또한 지난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1년 여성계 신년인사’에서 “대기업 그룹의 손자, 손녀는 자기 돈 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사람들 손자 손녀는 용돈을 쥐도 10만원, 20만원 줄 텐데 5만원 내고 식비 공짜로 해준다면 오히려 그들이 화가 날 것”이라고 복지논쟁에 가세.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또한 지난 18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상복지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부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전개함.
- 기득권을 대표하는 한나라당은 복지정책 왜곡에서 ‘세금폭탄’ 논리로 복지정책 확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함.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는 공짜로 포장한 세금폭탄, 국민 기만극”이라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은 이를 간명하게 드러냄.
-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상위2%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세금폭탄’으로 호도하여 실제 현 정부에서 이를 무력화시킨 사례를 다시 활용하고 있음.

[표1] 2009년 종합부동산세 감세 규모

	인원	세액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2007	482,622	2조7671억	1조2611억	9170억	5890억
상위10%	48,262	1조9599억 (70.8%)	6196억 (49.1%)	7667억 (83.6%)	5735억 (97.4%)
2009	212,618	9677억	1946억	4413억	3318억
상위 10%	21,261	8292억 (85.7%)	996억 (51.2%)	3994억 (90.5%)	3302억 (99.5%)

\*자료: 2008, 2010년 국세통계연보, ( )는 전체 대비 비중

-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2007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48만 명을 대상으로 2.76조 원을 부과함. 1인당 평균 570만원으로 과세 대상 48만 명은 인구 대비 1%, 경제활동인구 대비로는 1.9%에 해당하는 수치.
- 주목할 것은 부동산 보유 상위 계층 내에서도 자산집중도가 심각하여, 상위10%인 4만8천명이 전체 세금의 70.8%를 납부함. 4만8천명은 인구 대비 0.1%, 경제활동인구 대비 0.2%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1인당 평균 4060만원을 납부함. 나머지 43만 명(90%)은 1인당 평균 223만원을 납부한 셈.
- 2008년 11월 종부세 현재 판결 이후 2009년 과세대상자는 21만 명으로 2007년 대비 56% 감소. 세금은 2007년 대비 1조8천억(65%) 감소한 9677억을 부과.
- 2009년만 보면, 상위10%인 2.1만 명이 85.7%인 8300억을 납부. 상위 10%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불과 0.08%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들이 평균 3900만원을 납부. 특히 상위10%는 전체 토지 대상 종부세의 90.5~99.5%를 납부하였는데, 주택보다 토지의 집중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10%인 4만8천명(2007년)의 부동산 부자들은 2009년(4만2천명) 8800억을 납부했는데, 이들이 전체 감세 혜택(1.8조)의 60%인 1조원, 1인당 평균 2540만원의 감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사실상 경제활동인구의 0.1~0.2%의 극소수 부동산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현실을 왜곡시키는 폭력적 언어를 통해 무력화 됨.
- 2005년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중산층의 세금을 짜는 것은 재정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sup>1)</sup>
- 복지논쟁은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한나라당의 특성상, 세금 등 재원 확보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세금폭탄’에서 보듯,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 증가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려 하기 때문.
- 따라서 실제 세금을 계층별로 어떻게 납부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어떤 계층이 얼마만큼의 수혜를 입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음.
- 2008년 이후 현 정부가 대대적으로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감세 규모에 대해 계층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1) 경향신문(2010/1/18), ‘세금폭탄’ 녹슨 칼 다시 꺼낸 한나라.

- 2008년 이후 2009년 8월까지 있었던 세제개편 결과, 정부는 전년대비 방식으로 2008~2012년 5년 동안 총 33조 8,826억의 세수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를 기준년도 대비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90조 1,533억원으로 늘어남.<sup>2)</sup>
- 그러나 극소수의 연구조차 전체적인 감세규모만을 추정할 뿐, 소득 계층별로 감세혜택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음. 따라서 본문에서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먼저 어떤 계층이 얼마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실제 2009년에 2008년 대비 감세혜택이 계층적으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주로 분석함.
- 주요 분석 세목은 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대상으로 하며, 세법개정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세수의 변화를 과세표준에 따라 계층별로 분석함.

## 2. 주요 세법 개정 내용

### ■ 세법 주요 개정 내용

- 현 정부 들어 소득세법 개정은 2008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짐.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2009년과 2010년에 걸친 단계적인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함. 그러나 부자감세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여, 2009년 세법 개정에서는 최고세율 구간 인하 계획이 내년으로 유보된 상태.

[표2] 세법 주요 개정 내용

구분		2008년 소득	2009년 소득	2010년 소득
소득세	과세표준 1200 만원 이하	8%	6%	6%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17%	16%	15%
	과세표준 4,600만원~8,800만원	26%	25%	2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35%	35%	35%(33%~2012년 예정)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이하	13%	11%	10%
	과세표준 2억 초과	25%	22%	22%(20%~2012년 예정)

- 정부는 2008년 감세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함. 과표 1200 이하의 세율은 8%에서 6%로 감소하고, 1200~4600과 4600~8800은 17%, 26%에서 각각 1%p 씩 인하됨. 이 밖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

2) 국회 예산정책처(2009), 2008년 이후 세제 개편의 세수효과 분석.

- 기조에 따라 근로소득세 공제율 변화,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변경 등 소득 공제 체계 또한 상당부분 조정함.
- 그러나 2008년 12월 개정된 세법 중에서 가장 큰 세수 변화를 초래하는 내용은 법인세율 인하임. 2009년 귀속분부터 과표 2억을 초과하는 법인세의 세율이 25%에서 22%로 3%p 인하됨. 2010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0%로 추가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역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최고세율 인하는 내년으로 유보된 상태.
  - 2000년도만 해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각각 40%와 28%. 예정대로 내년에 최고세율이 인하되면 최고세율은 2000년 대비 각각 17.5%, 28.6% 낮아지게 됨.

■ 국회 예산정책처의 소득세 감세 효과 분석

- 국회 예산정책처(2009)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2009년에 가구당 평균 2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3] 국회 예산정책처의 소득수준별 감세 효과 분석 (단위:천원)

	경상소득	2008년 가처분소득	2009년 가처분소득	2010년 가처분소득
전 체	33,056	31,428	31,667(+239)	31,732(+65)
하위 10%	4,295	4,285	4,289(+4)	4,289(0)
10~20%	10,197	10,104	10,134(+30)	10,134(0)
20~30%	16,014	15,774	15,845(+71)	15,846(+1)
30~40%	21,661	21,144	21,276(+132)	21,285(+9)
40~50%	26,786	26,041	26,214(+173)	26,231(+17)
50~60%	32,272	31,254	31,472(+218)	31,500(+28)
60~70%	38,356	36,879	37,162(+283)	37,212(+50)
70~80%	46,046	44,053	44,406(+353)	44,482(+76)
80~90%	56,741	53,643	54,100(+457)	54,237(+137)
상위 10%	85,870	78,438	79,162(+724)	79,513(+351)

- \* 인용: 국회 예산정책처(2009), 2009년 세법개정안 분석; ( )는 전년대비 변화
- 위 분석에 따르면, 하위10% 가구는 현 정부 들어 단 4천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상위10%는 2009년에만 72.4만원의 혜택을 입음.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위10%는 하위10%의 20배(가처분소득 기준 18.3배)에 달하는데, 감세혜택은 180배에 달함.
- 가처분소득 대비 감세 규모를 보면, 2009년도에는 가구당 평균 0.76% 정도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 하위10%는 0.09%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상위10%는 0.92% 증가함.

### 3. 소득세 납부 현황과 감세 규모 분석

#### ■ 2009년 소득세 납부 현황

- 2009년 기준 소득세 납부대상자는 1425만 명, 실제 과세대상자는 854만 명. 전체 납부대상자의 40%인 570만 명은 소득공제 후 과세소득이 없는 과세미달자에 해당함. 과세미달자는 2008년 600만 명(43%)에서 2009년 570만 명으로 30만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과세대상 854만 명을 대상으로 계층별로 1인당 소득 수준과 세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표4] 소득10분위 별 1인당 총소득 및 납세 현황

	1인당 총소득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1인당 납세액	전체 납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850만)	3775만원	100%	150.9만원	100%
하위 10%	1411	3.7	1.15	0.08
10~20%	1632	4.3	3.69	0.24
20~30%	2003	5.3	7.04	0.46
30~40%	2427	6.4	11.8	0.78
40~50%	2819	7.4	17.8	1.18
50~60%	3287	8.7	26.6	1.77
60~70%	3875	10.3	47.9	3.18
70~80%	4656	12.3	113.9	7.56
80~90%	5861	15.5	250.1	16.61
상위 10%	9777	25.9	1027.4	68.12

\* 자료: 2010 국세통계연보

- 전체 과세대상 854만 명의 1인당 평균 총급여소득은 3775만원이며, 평균 납세액은 151만원.<sup>3)</sup>
- 상위10%와 하위10%의 급여소득 차이는 6.93배에 달함. 그러나 이 자료는 과세미달자(570만)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소득격차는 이보다 더욱 심각함.
- 소득세 결정세액을 보면, 하위10%는 1인당 평균 1.15만원을 납부. 이에

3) 총급여는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포함. 전체 납세대상자 1429.4만 명의 총급여소득은 369.6조이며, 1인당 평균은 2585만원. 이 중 과세대상자(854만)의 1인당 총급여는 3775만원, 과세미달자(753만)의 1인당 총급여는 829만원으로 나타남. 그러나 국세청의 근로소득에는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의 급여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급여수준에 대한 정확한 지표로 사용하기는 곤란함.

비해 상위10%는 1027만원으로 하위10%의 893배에 달함. 상위10%가 전체 소득세 납부액의 68%를 차지하였고, 상위20%까지 포함하면 85%에 달함.

[표5] 과세표준 별 2009년 총소득 및 납세 현황

	인원	과세대상 근로소득	과세표준	결정세액	세액/과표	세액/소득
전 체	854.1만	315.7조	121.3조	12.85조	10.59	4.07
과표 0~1200	538.1(63)	122.3(38.7)	24.17	0.67(5.2)	2.78	0.55
1200~4600	275.6(30.2)	143.9(45.6)	63.05	5.43(42.2)	8.61	3.77
4600~8800	32.38(3.8)	30.9(9.8)	19.13	2.87(22.3)	14.98	9.27
8800~	8.04(0.9)	18.64(5.9)	14.98	3.89(30.0)	25.92	20.84

\*자료: 2010 국세통계연보, ( )는 전체 대비 비중

- 현재 최고세율 35%의 과세표준은 8800만원인데, 이를 초과한 과세대상자는 80,432명. 이는 전체 과세대상자의 0.94%에 해당하며,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납세대상자의 0.56%에 해당함.
- 과표 8800 초과는 총급여소득 369.5조(과세미달자 소득 포함)의 5.9%, 전체 납세액의 30.2%를 차지. 평균 총급여는 2억3천으로 총급여 대비 소득세는 20.85%, 1인당 평균 4800만원을 납부함.
- 다음 단계인 과표 4600만원까지를 포함하면, 404,237명으로 과세대상자의 4.73%, 전체 납세대상자의 2.84%에 해당함. 1인당 총급여로 1억2천2백을 벌었으며 평균 167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여 실제 소득세율은 13.6%. 과표 4600을 초과하는 전체 납세대상자의 2.8%가 총 소득세의 52.3%를 납부.<sup>4)</sup>
- 감세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서, 과표 기준별로 2008년 소득 및 납세 현황을 파악하면 아래와 같음.

### ■ 2009년 계층별 감세 규모 분석

4) 과표 4000~4600의 평균 총급여는 7712만원, 4600~6000의 평균 총급여는 8754만원 이므로, 과표 4600을 초과하려면 총급여가 대략 8000만원을 넘어야 함.

[표6] 과세표준 별 2008년 총소득 및 납세 현황

	인원	과세대상 근로소득	과세표준	결정세액	세액/과표	세액/소득
전 체	798.1만	305.1조	118.0조	<b>14.18</b>	12.01	4.64
과표 0~1200	490.8(61.5)	116.0	22.5	<b>0.89</b>	3.95	0.77
1200~4600	266.4(33.4)	139.3	61.2	<b>6.18</b>	10.09	4.43
4600~8800	32.9(4.1)	31.3	19.5	<b>3.16</b>	16.21	10.08
8800~	7.97(1.0)	18.4	14.8	<b>3.95</b>	26.69	21.48

- 2008년 14.18조에서 2009년 12.85조로 소득세 납부 총액은 9.4%(1.33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8년 유효세율(세액/과표)은 12%에서 2009년 10.6%로 1.4%p 감소.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세율은 4.64%에서 4.07%로 0.6%p 감소.
- 소득수준별로 유효세율 인하 폭을 살펴보면, 과표 1200 이하 계층은 3.95%에서 2.78%로 1.2%p 감소. 과표 1200~4600 계층은 10.1%에서 8.6%로 1.5%p 감소. 고소득인 4600~8800 계층은 16.2%에서 15%로 1.2%p 감소. 초고소득 계층은 26.7%에서 25.9%로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별로 감세 규모를 살펴보면, 1200 이하 계층은 0.2조, 1200~4600 계층은 0.75조, 4600~8800 계층은 0.3조, 8800 초과는 0.06조 감소. 1200~4600 계층이 전체 감세 비중의 56%를 차지함.
- 그러나 이는 계층에 포함된 인원의 변화와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소득 계층별로 1인당 기준 감세 규모를 파악하면 아래와 같음.

[표7] 2008년 1인당 소득 및 납세 현황(단위: 천원)

	인원	1인당 평균 과세소득	1인당 평균 과세표준	1인당 평균 결정세액	세액/과표	세액/소득
전 체	798.1	3822.7	1479.1	<b>177.67</b>	12.01	4.64
과표 0~1200	490.8(61.5)	2364.1	459.0	<b>18.13</b>	3.95	0.77
1200~4600	266.4(33.4)	5229.7	2297.7	<b>231.98</b>	10.09	4.43
4600~8800	32.9(4.1)	9525.8	5924.0	<b>960.48</b>	16.21	10.08
8800~	7.97(1.0)	23074.0	18569.6	<b>4956.08</b>	26.69	21.48



[포8] 2009년 1인당 소득 및 납세 현황

	인원	1인당 평균 과세소득	1인당 평균 과세표준	1인당 평균 결정세액	세액/과표	세액/급여
전 체	854.12만	3697	1420	<b>150.47</b>	10.59	4.07
과표 0~1200	538.05	2273	449	<b>12.47</b>	2.78	0.55
1200~4600	275.64	5219	2287	<b>196.96</b>	8.61	3.77
4600~8800	32.38	9546	5907	<b>885.16</b>	14.99	9.27
8800~	8.04	23168	18620	<b>4830.66</b>	25.94	20.84

- 2008년 대비 2009년은 1인당 평균 27.2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200 이하는 5.7만원, 1200~4600은 35만원, 4600~8800은 75만원, 8800 초과는 125.4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초고소득층은 1200 이하 계층에 비해 금액 기준으로 1인당 4.6배의 감소 혜택을 입음.
- 2008년 대비 2009년은 과세대상 인원이 7%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납세 인원 증가를 고려하여 감세규모를 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9] 인원 조정 2009년 소득세 감세 규모

	인원(A)	2008년 1인당 납세액(B)	A X B	2009년 실제 납세액	조정 후 감세규모	비중
전 체	854.12만	177.67만	14.46만	12.852만	<b>1.61조</b>	<b>100%</b>
과표 0~1200	538.05	18.13	0.9755	0.671	<b>0.30</b>	<b>18.6%</b>
1200~4600	275.64	231.98	6.394	5.429	<b>0.97</b>	<b>60.2%</b>
4600~8800	32.38	960.48	3.11	2.866	<b>0.24</b>	<b>14.9%</b>
8800~	8.04	4956.08	3.9846	3.886	<b>0.1</b>	<b>6.2%</b>

- 납세대상 인원 증가분을 조정하면, 실제 소득세 감소 규모는 1.61조로 나타남. 즉 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변경 등 세제 상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2009년은 2008년 대비 1.61조 만큼 추가로 징세할 수 있었음.<sup>5)</sup>
- 과표 대비 납세액 또는 소득 대비 납세액이 2007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소득세 감소 규모를 추정하면 1.56~1.57조로 앞의 분석과 거의 차이가 없음.
- 전체 감세 비중은 1200 이하가 17~18%, 1200~4600 계층이 60%, 4600~8800 계층이 15%, 8800 초과가 6~7%를 차지함. 고소득 계층은 과세대상 인원의 3.7%, 0.9%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각각 15%, 6~7%의 감세 비중은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님.
- 특히 2010년에는 과표 1200~4600 구간과 4600~8800 구간에서 추가로 1%p 씩 세율이 인하된 사실을 고려하면, 2010년에 고소득층의 감세 비중

5) 2007년 대비 2009년의 소득세 감세 규모는 2.6조에 해당함.

이 더욱 증가했을 것이 확실함. 또한 내년에 시행되기로 예정된 8800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인하(35%→33%)는 전적으로 최고소득층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함.

[표10] 과세표준 기준 2009년 소득세 감세 규모

	2009년 과표(A)	2008년 세액/과표(B)	A X B	2009년 실제 납세액	인원 조정 감세규모	비중
전 체	121.32만	12.01만	14.41만	12.85만	<b>1.56조</b>	<b>100%</b>
과표 0~1200	24.17	3.95	0.954	0.67	<b>0.28</b>	<b>17.9%</b>
1200~4600	63.05	10.09	6.36	5.43	<b>0.93</b>	<b>59.6%</b>
4600~8800	19.13	16.21	3.10	2.87	<b>0.23</b>	<b>14.7%</b>
8800~	14.98	26.69	3.998	3.89	<b>0.11</b>	<b>7%</b>

[표11] 과세소득 기준 2009년 소득세 감세 규모

	2009년 소득(A)	2008년 세액/소득(B)	A X B	2009년 실제 납세액	인원 조정 감세규모	비중
전 체	315.74만	4.64만	14.42만	12.85만	<b>1.57조</b>	<b>100%</b>
과표 0~1200	122.3(38.7)	0.77	0.94	0.67	<b>0.27</b>	<b>17.2%</b>
1200~4600	143.9(45.6)	4.43	6.37	5.43	<b>0.94</b>	<b>59.9%</b>
4600~8800	30.9(9.8)	10.08	3.11	2.87	<b>0.24</b>	<b>15.3%</b>
8800~	18.64(5.9)	21.48	4.00	3.89	<b>0.11</b>	<b>7%</b>

### 3.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과 감세 규모 분석

#### ■ 계층별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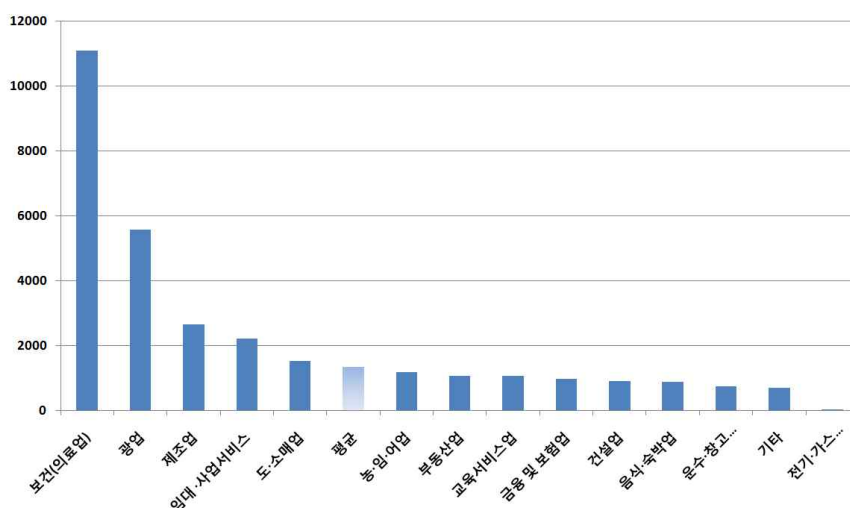
- 2009년 기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497만 명에 달함. 이 중 과세미달 추정인원은 136.8만 명으로 27.5%, 확정신고 대상인원은 360만 명. 신고 과정에서 과표가 0인 사업장이 72.3만 명으로 총 과세미달 사업장은 209만 개로 전체 납세대상자의 42.1%를 차지함.

[표12] 소득10분위별 2009년 종합소득 및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

	1인당 종합소득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1인당 과표	1인당 세액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3,570,816)	2526.7만	100%	1867.0만	327.6만	100%
하위 10%	84.2	0.33	1.25	0.45	0.007
10~20%	313.4	1.24	49.6	2.3	0.2
20~30%	463.2	1.83	122.8	6.3	0.6
30~40%	631.4	2.50	204.7	10.8	1.1
40~50%	835.8	3.31	316.5	16.6	1.7
50~60%	1108.6	4.39	502.5	26.0	2.7
60~70%	1527.8	6.04	837.3	45.0	4.5
70~80%	2262.2	8.95	1417.1	100.9	7.6
80~90%	3856.2	15.26	2656.5	266.8	14.2
상위 10%	<b>14184.6</b>	<b>56.14</b>	<b>12561.7</b>	<b>2801.2</b>	<b>67.2</b>

- 위의 표는 확정신고 대상 357만을 대상으로 소득기준별 1인당 과세표준과 납세액을 나타낸 것임. 종합소득 납세자는 1인당 평균 2527만원의 종합소득(수입-비용)을 신고함. 이는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 3697만원의 68% 수준에 불과함.
- 자영업자의 상하위 10%의 소득격차는 무려 170여 배 차이가 발생함. 상위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 납세액은 67%를 차지. 이에 비해 하위80%를 모두 합해도 소득 비중은 28.6%, 납세 비중은 18.4%에 불과할 정도로 소득 편중이 심각함.

[그림1] 2009년 업종별 평균 소득금액(단위:억원)



- 상위10%의 종합소득은 1.41억으로 급여소득자 상위10%(0.98억) 보다 44% 높음. 자영업자의 최상위 소득이 높고, 소득격차가 심각한 것은 주로

업종별 차이에서 비롯됨.

-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411만 신고 사업장의 평균 소득금액은 1336만원에 불과. 대부분의 사업장 평균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밑돌지만, 의료업의 평균소득은 1.1억으로 압도적으로 높음.

### ■ 계층별 종합소득세 감세 규모 분석

[표13] 2009년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

	인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결정세액	세액/과표	세액/소득
전 체	357만	90.2조	66.7조	11.7조	17.48%	12.97%
과표 0~1200	257.0(72.0%)	19.8(22.0%)	7.5	0.37(3.2%)	4.97	1.89
1200~4600	70.0(19.6%)	23.1(26.8%)	16.3	1.54(13.2%)	9.46	6.67
4600~8800	17.0(4.8%)	12.8(14.2%)	10.6	1.57(13.4%)	14.77	12.21
8800~	13.2(3.7%)	34.4(38.1%)	32.2	8.21(70.2%)	25.48	23.86

- 2009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11.7조를 납부. 과표 8800 초과 초고소득층 13만 명은 과세대상자의 3.7%, 전체 납세대상자의 2.6%에 불과함. 그러나 이들이 전체 종합소득의 38%, 소득세의 70.2%를 차지함.

[표14] 2008년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

	인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결정세액	세액/과표	세액/소득
전 체	358.4만	85.1조	64.7조	11.73조	18.14%	13.78%
과표 0~1200	262.8	18.7	7.9	0.54	6.78	2.85
1200~4600	66.6	21.2	15.5	1.68	10.83	7.91
4600~8800	16.4	12.2	10.3	1.62	15.83	13.30
8800~	12.7	32.9	31.0	7.89	25.46	23.96

- 2008년 대비 2009년 종합소득세는 11.7조로 불과 300억 감소하여 거의 변함없음. 유효세율(세액/과표)은 평균적으로 0.66%p 감소하였고, 소득대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 0.8%p 감소.
- 소득 계층별로 감세 규모를 살펴보면, 1200 이하는 0.16조, 1200~4600은 0.14조, 4600~8800은 0.06조 감소. 이에 비해 8800 초과는 0.3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원 및 소득 변동에 따른 실제 감세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인당 기준으로 바꾸면 아래 표와 같음.

[표15] 2008년 1인당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

	인원	1인당 평균 종합소득	1인당 평균 과세표준	1인당 평균 결정세액	세액/과표	세액/소득
전 체	358.4만	2373.7만	1804.1만	327.72만	18.14%	13.78%
과표 0~1200	262.8	713.2	300.6	20.38	6.78	2.85
1200~4600	66.6	3187.9	2330.4	252.29	10.83	7.91
4600~8800	16.4	7441.7	6257.2	990.23	15.83	13.30
8800~	12.7	25985.0	24465.7	6228.0	25.46	23.96

[표16] 2009년 1인당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

	인원	1인당 평균 종합소득	1인당 평균 과세표준	1인당 결정세액	세액/과표	세액/소득
전 체	357만	2527.31만	1867.39만	327.77만	17.548%	12.97%
과표 0~1200	257.0	771.63	292.88	14.55	4.969	1.89
1200~4600	69.99	3306.61	2329.33	220.32	9.458	6.67
4600~8800	16.99	7555.62	6246.61	922.89	14.774	12.21
8800~	13.18	26110.01 <sup>6)</sup>	24447.65	6229.89	25.482	23.86

- 소득 계층별로 1인당 감세 규모를 살펴보면, 1200 이하가 5.8만원, 1200~4600이 32만원, 4600~8800이 67만원, 8800 초과는 거의 변함없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17] 인원 기준, 2009년 종합소득세 감세 규모

	2009년 인원(A)	2008년 1인당 납세액(B)	A X B	2009년 실제 납세액	인원 조정 감세규모	비중
전 체	357.1만	327.7만	12.18조	11.695조	0.485조	100%
과표 0~1200	257.0	20.378	0.524	0.374	0.15	31.2%
1200~4600	69.99	252.29	1.766	1.542	0.224	46.6%
4600~8800	16.99	990.23	1.682	1.568	0.114	23.7%
8800~	13.18	6228	8.208	8.211	-	0%

- 2008년 대비 2009년은 과세대상 인원에서는 거의 변함없음. 2007년 1인당 납세액, 과표, 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감세정책이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감세 규모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6) 전체 평균 6.5% 증가에 비해, 초고소득층에서 1인당 종합소득이 2.60억에서 2.61억으로 0.5%밖에 증가하지 않음. 원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2009년에 금융 위기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득 감소로 추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2007년 금융소득 신고인원은 61,475명(9.74조)에서 2009년은 51,261명(8.79조)으로 줄어듦. 또한 신용카드 등 세원 노출과 집중적 세무조사로 초고소득층의 감세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임.

[표18] 과표 기준, 2009년 종합소득세 감세 규모

	2009년 과표(A)	2008년 세액/과표(B)	A X B	2009년 실제 납세액	인원 조정 감세규모	비중
전 체	66.7조	18.1%	12.15조	11.695조	0.455조	100%
과표 0~1200	7.527	6.778	0.51	0.374	0.14	30.7%
1200~4600	16.303	10.825	1.764	1.542	0.22	48.35%
4600~8800	10.613	15.825	1.68	1.568	0.112	24.6%
8800~	32.222	25.456	8.202	8.211	-	0%

[표19] 종합소득 기준, 2009년 종합소득세 감세 규모

	2009년 소득(A)	2008년 소득/과표(B)	A X B	2009년 실제 납세액	인원 조정 감세규모	비중
전 체	90.2조	13.8%	12.35조	11.695조	0.655조	100%
과표 0~1200	19.831	2.85	0.565	0.374	0.191	29.1%
1200~4600	23.143	7.91	1.83	1.542	0.288	44.0%
4600~8800	12.837	13.3	1.707	1.568	0.139	21.2%
8800~	34.413	23.96	8.245	8.211	0.034	5.2%

- 과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감세 규모는 0.45~0.48조,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감세 규모는 대략 0.65조에 달함. 세율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등 과세 체계가 변했기 때문에 실제 감세 규모의 정확한 추정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함.
- 따라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하면, 2009년에만 2008년 대비 실제 소득세 감세 규모는 2.2조에 달함.<sup>7)</sup>

#### 4. 법인세 납부 현황과 감세 규모 분석

##### ■ 소득 수준별 법인세 납부 현황

- 2009년 기준, 법인세 납부 대상 사업장은 419,420개로 집계되었는데, 이중 적자법인은 14만개로 전체의 34%에 달함. 흑자법인은 27.7만개로 과세대상인 과세소득은 200조로 나타남.
-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204조에 비해 과세소득은 1.8% 정도 줄어

7) 2007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9년 소득세는 2.6조 종합소득세는 0.9~1.1조가 감소하여 소득세 총합은 2007년 대비 3.6조 감소한 것으로 추정.

- 든 것으로 나타남. 총납세액은 37.3조에서 34.8조로 전년대비 6.6% 감소.
- 2009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감소하여, 소득 감소 대비 법인세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흑자법인 27.7만개를 대상으로 과세소득 규모별 법인세 부담액을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음.

[표20] 순소득 규모별 법인세 부담 현황(단위:억원)

소득 규모별	법인 수	비중	과세소득	과세표준	총부담세	비중	실효세율
5000억 초과	48개	<b>0.01%</b>	706,194	634,056	131374	<b>37.69%</b>	20.7/18.6
1000~5000억	170	<b>0.04</b>	333,777	299,693	62756	<b>18.01</b>	20.9/18.8
500~1000억	195	<b>0.05</b>	136,199	120,139	25696	<b>7.37</b>	21.4/18.9
200~500	505	0.12	154,041	132,630	28273	8.11	21.3/18.4
100~200	811	0.19	113,588	99,614	21135	6.06	21.2/18.6
50~100	1489	0.36	104,501	90917	18118	5.20	19.9/17.3
20~50	3,819	0.91	118,277	102,292	19415	5.57	19.0/16.4
10~20	5,436	1.30	75,986	67237	11919	3.42	17.7/15.7
5~10	10,051	2.40	70,195	62149	9989	2.87	16.1/14.2
0~5	239,328	57.06	193,222	169707	18994	5.45	11.2/9.8
0이하	15,672	3.74	-	10	45	0.01	-
흑자법인 합계	277,524	66.2					
적자법인	141,896	33.8					
총 법인수	419,420	100%	2,005,983	1,778,780	348,545	100%	19.6/17.4

\* 실효세율=총부담세/과세표준, 총부담세/과세소득

- 2009년 기준, 전체 42만개 법인 중에서 48개(0.01%) 기업이 전체 과세소득의 35%, 법인세 점유 비중은 37.7%를 차지함.
- 과세소득 500억을 초과한 대기업 413개(0.1%)가 소득의 58.6%, 법인세 점유 비중은 63.1%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별 소득(이윤) 격차가 심각함.
- 과세소득 100억을 초과한 대기업 1729개(0.4%)가 소득의 72%, 법인세의 77.2%를 차지. 반면, 5억 미만 기업 38만개(적자기업 포함)는 법인수로는 전체의 90.0%를 차지하지만, 법인세 비중은 5.5%에도 미치지 못함.
- 법인세율은 2008년 과표 2억을 기준으로 각각 11%, 25%에서 2009년 11%, 22%로 인하되었음. 따라서 전체 법인 수의 0.1%에 불과한 400개 대기업이 감세 혜택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현행 과표는 2억을 기준으로 2단계로 구분되지만, 실제 기업 규모별로 어떤 기업에게 감세혜택이 집중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과표를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5000억, 500억, 100억, 10억, 2억으로 각각 구분하여 흑자기업 27.7만개를 대상으로 소득과 세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21] 과표기준 별 2009년 법인세 납부 현황

	법인수(A)	과세소득	과세표준	총 납세액	세액/과표	세액/소득
전 체	277,524개	200.6조	177.9조	34.85조	19.6%	17.4%
과표 0~2억	231,955	26.1	9.3	1.01	10.9	3.7
2~100억	44,053	42.5	40.2	6.96	17.3	16.4
100~500	1147	24.1	23.2	4.93	21.2	20.4
500~5000억	325	43.0	41.8	8.83	21.1	20.5
5000억 초과	44	65.2	63.3	13.12	20.7	20.1

[표22] 과표기준별 2008년 법인세 납부 현황

	법인수(A)	과세소득	과세표준	총 납세액	세액/과표	세액/소득
전 체	268,323개	204.35조	181.55조	37.31조	20.5%	18.3%
과표 0~2억	226,651	27.14	8.94	1.26	14.04	4.6
2~100억	40,089	40.37	38.60	7.30	18.92	18.1
100~500	1237	26.64	25.35	5.50	20.87	20.6
500~5000억	297	41.27	40.94	8.98	21.94	21.8
5000억 초과	49	68.93	67.72	14.26	21.05	20.7

-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유효세율(세액/과표)이 일반 대기업보다 낮은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돌아가기 때문. 유효세율은 2008년 대비 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법인세 납부총액 37.3조에서 2009년에는 34.8조로 6.6%(2.45조) 감소함. 이 중 과표 5000억 초과 대기업은 14.2조에서 13.1조로 1.14조 감소하여 전체 감세 총액의 46.7%를 차지함. 상위 0.01% 대기업이 법인세 점유 비중은 37.7%인데 감세 혜택은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과표 2억 미만인 84%(22.7만개) 기업은 0.24조로 전체 감세 비중의 10%에도 미치지 못함.

[표23] 2009년 법인세 감세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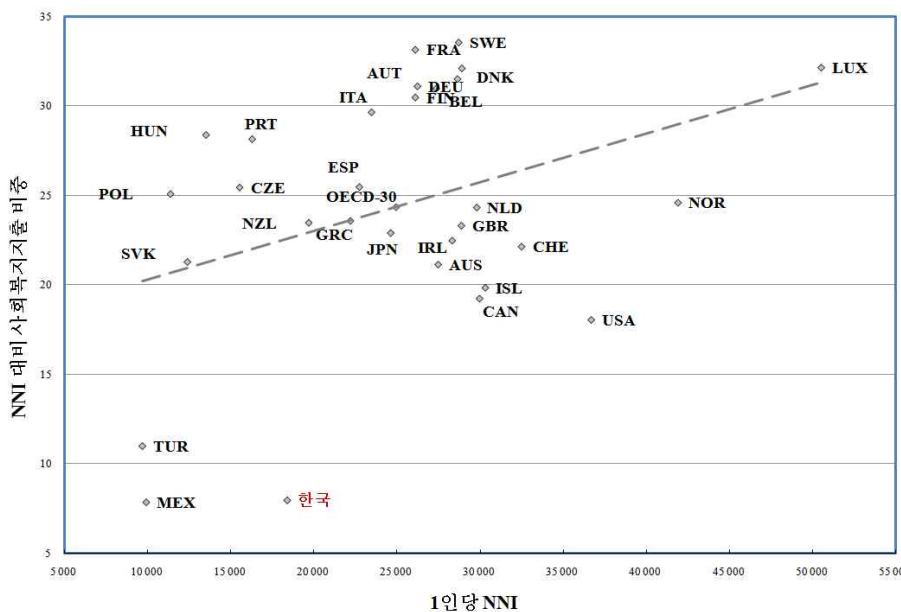
	2008 납세	2009 납세	감세 규모	비중
전 체	37.31조	34.85조	2.45조	100%
과표 0~2억	1.26	1.01	0.24	9.9%
2~100억	7.30	6.96	0.34	13.9%
100~500	5.50	4.93	0.57	23.2%
500~5000억	8.98	8.83	0.15	6.2%
5000억 초과	14.26	13.12	1.14	46.6%

## 5. 결론 및 정책함의



■ 경제력에 비해 형편없는 복지후진국

[그림2] OECD 30개국의 국민소득과 사회복지 비중(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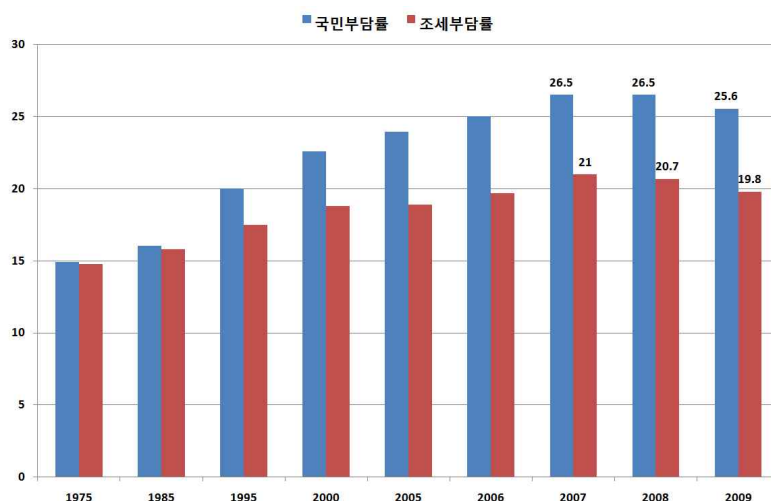


- 위 그림은 OECD 30개 국가의 2005년 기준, 1인당 순국민소득(NNI)<sup>8)</sup>과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비교한 것임.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순국민소득은 18385 달러로, OECD 평균 24925달러의 74%에 달함.
- 그러나 NNI 대비 사회복지비중은 8%로, OECD 평균 24.4%의 1/3 수준에 불과함.
- 우리나라와 필적할 만한 국가는 멕시코인데, 1인당 NNI가 9911달러로 우리나라의 54%에 불과함. 1인당 NNI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는 뉴질랜드(19677), 포르투갈(16227) 등의 국가인데, 복지지출 비중은 각각 24.3%와 18.2%로 우리보다 훨씬 높음. 따라서 추세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회복지 비중은 순국민소득 대비 22.5%로 14.5%p 상승해야 함.
- OECD 평균 또는 추세선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서 복지지출은 형편없는 복지후진국. 즉 국민들은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시스템의 열위로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현 정부의 감세정책 결과, 2009년에만 2008년 대비 원천징수 소득세

8) 순국민소득(Net National Income; NNI)은 국내총생산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순요소소득을 더한 다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차감하여 계산함.

1.6조, 종합소득세 0.5~0.6조, 법인세는 2.4조, 종합부동산세는 1.8조 (2007년 대비) 감소함. 이를 4대 세목만 모두 합해도 2009년에만 전년 대비 6.4조 감소함.

[그림3] 연도별 조세부담률 변화 추이



- 현 정부의 ‘감세’, ‘작은 정부’, ‘선별적 복지’는 OECD 국가에 비해서 형편 없는 복지수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부담률 증가, ‘보편적 복지’ 등 시대적 추세와 전혀 조응하지 못함.
-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확대에 따라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에, 경기침체와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 비율은 오히려 하락함.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6.5%에서 0.9%p 감소하였고, 조세부담률은 21%에서 1.2%p 감소함.

■ 고소득대기업 증세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양극화와 차별 해소해야

- 2009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2.1만(경제활동인구 대비 0.08%)명이 85.7%를 납부하였고 이들이 전체 감세의 60%인 1조원의 혜택을 입음.
- 소득세는 전체 납세대상자의 0.56%(과표 8800 초과)가 전체 소득세의 30.2%를 납부. 전체 납세대상자의 2.84%(과표 4600 초과)가 소득세 비중 52.5%를 차지함. 이들이 전체 소득세 감세의 21~22%를 차지함.
- 종합소득세는 전체 납세대상자의 2.6%(과표 8800초과)가 종합소득세의 70.2%를 차지함. 이들이 전체 종합소득세 감세의 5% 정도를 차지함.

- 법인세는 전체 42만 개 법인의 0.01%인 48개 대기업이 총 법인세의 37.7%를 차지함. 과세소득 100억을 초과한 대기업 1729개(0.4%)가 총 법인세의 77.2%를 차지함. 이 중 과표 5000억 초과 44개 대기업의 법인세는 14.2조에서 13.1조로 1.14조 감소하여 전체 감세 총액의 46.7%를 차지함.
- 2010년 또한 과표 1200~4600 구간과 4600~8800 구간에서 추가로 1%p 세율이 감소함. 내년 2012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35%→33%)이 2%p 인하되고, 법인세 최고세율(22%→20%) 역시 2%p 인하가 예정되어 있어 감세규모는 해마다 더욱 늘어나고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확대되는 누진세의 특성상, 전반적 감세와 증세는 모두 상위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복지확대를 ‘세금폭탄’이라 주장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겁주는 것은 사교육 학원의 ‘공포 마케팅’ 상술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근거 없음.
- 종합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거품과 더불어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보수 정치권과 언론의 ‘세금폭탄’ 공세가 실제 효과를 발휘함. 그러나 소득세나 법인세는 ‘거품’이 발생할 수 없고, 계층별 소득 및 세금 납부 현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통한 복지 확대 반대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복지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내년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폐기해야 함. 이는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전혀 부응하지 못한 조치임.
- 오히려 고소득 계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실제 2004년 대비 과표 8000만 이상 고소득자는 14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세율 변화나 과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표24] 과표 기준 원천징수 고소득자 현황

	합계	8000~1억	1~2억	2~3억	3~5억	5~10억	10억 초과
2004	41000명	17000	18000	3000	3000		
2005	53037	22231	22626	4020	2531	1629	
2006	68591	28626	29826	4991	3028	1519	601
2007	89197	36655	39435	6405	3665	2084	953
2008	100136	40755	44080	7555	4347	2463	936
2009	100391	39513	45085	7804	4739	2418	832

-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 8000 초과 고소득자는 77,565명에서 150,365명으

로 94% 증가함. 이 중 2억~3억은 17,791명, 3~5억은 10,901명, 5~10억은 5,890명, 10억 초과는 3,037명으로 나타남.

- 특히 현행 법인세는 과표 기준 2억을 기준으로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50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과 2억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같은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어 왔음.
- 실제 2008년 세제 개편에서 감세 규모가 가장 큰 분야가 법인세로 과표 1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입음. 대기업에 이윤이 집중되는 경제구조에 비추어, 과표와 세율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즉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양극화를 시정하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세와 재정지출을 전면 개편해야 함.